

행정심판 위원회 운영

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한 시민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,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14 최종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119,100	134,100	15,000	12.59

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- 행정의 신뢰성 제고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행정심판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

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제반경비 지원
- 규모 : 위원장(시장,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), 위원장이 지정하는 8인(외부위원 6인)
- 사업기간 : 2015. 1. 1. ~ 2015. 12. 31.
- 사업내용 : 행정심판위원회 정례 개최
- '15년도 소요예산 : 134,100천원

추진경위

- 헌법 제107조 제3항으로 보장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설치·운영

□ 2015년도 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예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125,520	119,100	134,100	15,000
사무관리비	120,120	114,240	129,240	15,00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5,400	4,860	4,860	-

□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<p>총사업비 134,100천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관리비 : 129,24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원수당, 장애등급판정 자문수당, 속기료, 심리안건 책자발간 ■ 시책업무추진비 : 4,86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다과비, 간담회비

□ 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- 행정심판 종료 후 위원 및 속기사에게 수당지급
 -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전문의에게 자문 후 수당지급
 - 심리안건 책자 발간 및 위원회 다과지급 등
- 계약체결
 - 해당 없음

□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- 추진방향
 - 예측 가능한 심판절차 안내 : 단계별 진행사항 안내(SMS 등 활용)
 - 구술심리 및 주·부심 제도 확대운영 : 법무행정서비스 팝업 공지
-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134,100	
행정심판위원회운영	'15.1. ~ '15.12.	134,100	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기획조정실	법무담당관	행정심판1팀장	최 승 호 (2133-6694)	주무관	고 준 영 (2133-6697)